

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. 9. 29 조례 제206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은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지원단의 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·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,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 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 2. 모집·배치팀
 3. 활동관리팀
 4. 활동지원팀
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지원단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. 다만,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, 지원단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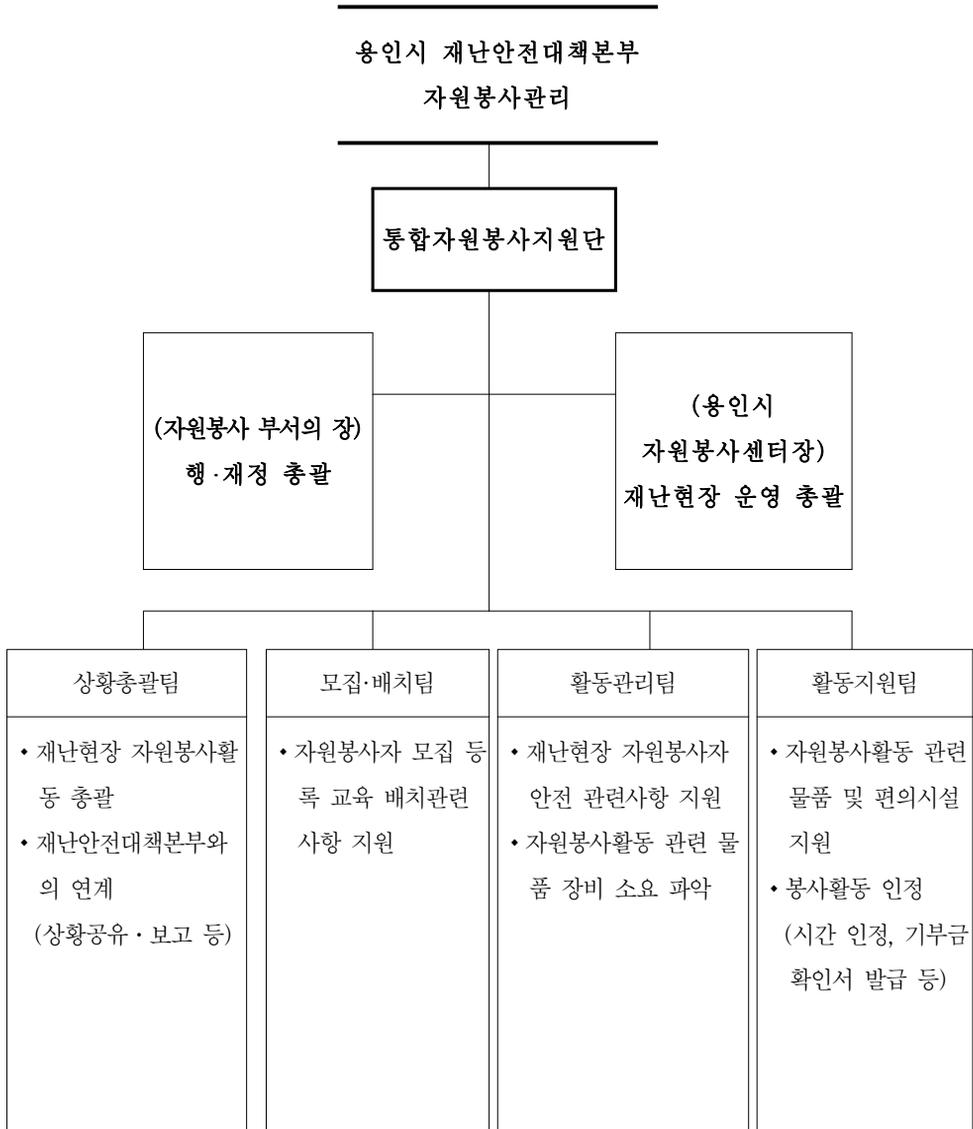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·관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팀명	담당 사무
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총괄
상황총괄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(상황공유 · 보고 등) ▶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행 · 재정 지원
모집 · 배치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원봉사자 모집 · 등록 · 교육 · 배치관련 사항 지원
활동관리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지원 ▶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· 장비 소요 파악 ▶ 자원봉사활동 평가(모니터링, 활동기록 등)
활동지원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식 · 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